

「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,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(민간위탁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
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○ (필요성)

- 23년 “농촌협약” 공모선정되어 농촌협약체결을 위한 전제조건
- 전담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여 전문성 확보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컨설팅
- 농촌주민, 현장활동가 등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교육프로그램

○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-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/W사업지원
-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, 포럼,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○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공급·전달 지원사업

-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기획, 이행지원
- 현장활동가가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, 전달과정에 참여프로그램 기획

라. 위탁기간 : 2024 ~ 2025(2년간), 재연장 가능

마. 소요예산 : 시군역량강화 예산 297백만원(2024년 기준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조례」 ,
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
○ 검토 결과,

-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